

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		30일
신청인	산학협력단 또는 산업교육기관의 명칭	사업자등록번호
		법인등록번호
	대표자	전자우편
	대학명	
	소재지(본교)	전화/팩스
	소재지(분교)	전화/팩스

출자기관 및 기술지주회사 개요

출자자	성명(기관명)	출자금액(지분)	출자자산(항목)
		합계	100.0
기술지주회사	기업명		
	소재지	본사	
		지사	

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날인)

교육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기술지주회사 설립·운영 계획서 2. 임원의 이력서 3. 정관(「공증인법」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) 4. 그 밖에 설립인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처리절차								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결정	→	통지
신청인		처리기관: 교육부						